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1110 무고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진순(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박경화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고단447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인용)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면 14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¹⁾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

 판사 정소영 _____

 판사 김승섭 _____

1)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등 참조).